

2025년 G-Space 예비·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

[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“G-Space@East”]

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「2025년 예비·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4월 3일

(재)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☐ **(사업목적)** 양산시 소재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☐ **(지원대상 및 규모)** ‘예비창업자’ 및 창업 후 3년 이내 ‘초기창업기업’
※ 타 지역 지원자 등 상세 신청자격은 동 공고 (2page) “2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” 참조

구 분	지 원 대 상	지 원 규 모
예비창업자	양산 지역에서 기술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	10개사(팀)
초기창업자	양산 지역에서 기술창업을 ‘진행’ 또는 ‘예정’인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	

☐ **(지원기간)** 협약체결일 ~ 2025. 12. 31.

☐ **(지원내용)** 사업화지원금 기업별 1천만원,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등

구 분	지 원 내 용
사업화 지원금	• 창업기업 사업모델(BM) 혁신,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
액셀러레이팅	• 기업 진단·분석, 맞춤형 컨설팅, IR 역량강화 등
창업 프로그램	• 창업교육 프로그램, 투자자 밋업 프로그램 및 직·간접 투자지원, 네트워킹 등

☐ **(수행장소)**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“G-Space@East”

(*소재지: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)

□ (신청자격)

○ (예비창업자)

- 사업 공고일('25.4.3.)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자
- * 사업자의 종류, 타 분야(업종)으로의 창업,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 (개인, 법인)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- 예비창업자 판단은 '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' 기준으로 하며,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<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>

▶ 온라인 발급

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 → [증명·등록·신청] → [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] → [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] → 신청/제출 → 발급(신청 후 3시간 이상 소요 및 익일 발급 될 수 있음)

▶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

- ★ 관할 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(누락시 불인정)

- (초기창업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('25.4.3.) 기준 '창업 후 3년 이내'의 양산시 소재 기업

- * 신청가능 업력 기준은 2022년 4월 3일(포함) 이후 창업한 기업
- * 소재지 기준은 ★본점★에 한함(지점·공장·연구소 등은 신청 불가)

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
▶ 업력 및 소재지 기준
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및 '주소지(본점)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및 '주소지(본점)' 기준
- 예비사업자 및 타 지역 지원자 : 협약체결 후 '3개월 이내(2025년 8월 15일까지)' 사업자등록 상 본점의 소재지를 양산시로 등록 및 이전 완료하여야 함

▶ 양산시 내 본점과 공장 또는 본점과 연구소, 또는 모두가 함께 있는 경우

- ☞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함

▶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

- ☞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★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(창업기업확인서)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**(신청 제외 대상)** ※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

① 2025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- ※ 지원과제(창업아이템)의 동일유무 관계없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
- ※ 단,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(2025년 이전 사업)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②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G-Space@East “예비·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”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‘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’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‘재창업 자금지원’을 받은 자

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④ 조건 예외 대상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⑤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

* 지원제외 대상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*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⑦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⑧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⑨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⑩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**(협약기간)** 협약체결일 ~ 2025. 12. 31.

□ **(지원내용)** 사업화지원금 및 맞춤형 액셀러레이팅, 창업 프로그램 등
- 사업화지원금 : 기업별 1천만원

구분	내용														
사업화 지원금	제품·서비스 고도화,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모델(BM) 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사업화지원금 기업별 1천만원 지원														
	[총 사업비] = [사업화지원금 1천만원] + [창업자부담금*(지원금의 10%_부가세)]														
	* (창업자부담금) 지원받은 기술고도화지원금의 사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(10%)는 창업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이를 창업자부담금으로 함														
	<사업화지원금 비목>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비 목</th><th>비목 정의</th></tr><tr><td>재료비</td><td>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·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</td></tr><tr><td>외주용역비</td><td>자체적으로 시제품 등의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</tr><tr><td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<td>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소요 비용</td></tr><tr><td>지급 수수료</td><td>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 등)</td></tr><tr><td>홍보·마케팅비</td><td>제품(서비스)과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 되는 비용</td></tr></table>	비 목	비목 정의	재료비	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·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외주용역비	자체적으로 시제품 등의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소요 비용	지급 수수료	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 등)	홍보·마케팅비	제품(서비스)과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 되는 비용		
비 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	
재료비	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·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			
외주용역비	자체적으로 시제품 등의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	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소요 비용														
지급 수수료	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 등)														
홍보·마케팅비	제품(서비스)과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 되는 비용														
창업 프로그램	(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) 기업 진단·분석, 전문가 1:1 컨설팅, 투자유치 지원 등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<tr><td>기업 진단</td><td>기업별 창업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심층 분석·진단</td></tr><tr><td>맞춤형 컨설팅</td><td>기업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1:1 전문가 컨설팅 진행</td></tr><tr><td>초기창업 역량강화</td><td>고객지향형 창업방법론 실습교육(CORN프로젝트 1~2단계 과정)</td></tr><tr><td>투자유치 IR</td><td>투자 IR 및 투자상담회 등 투자자 및업 기회 제공</td></tr><tr><td>창업교육</td><td>창업 실전교육 프로그램 진행</td></tr><tr><td>네트워킹</td><td>참여기업 간 연계·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</td></tr></table>	구분	세부내용	기업 진단	기업별 창업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심층 분석·진단	맞춤형 컨설팅	기업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1:1 전문가 컨설팅 진행	초기창업 역량강화	고객지향형 창업방법론 실습교육(CORN프로젝트 1~2단계 과정)	투자유치 IR	투자 IR 및 투자상담회 등 투자자 및업 기회 제공	창업교육	창업 실전교육 프로그램 진행	네트워킹	참여기업 간 연계·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
	구분	세부내용													
	기업 진단	기업별 창업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심층 분석·진단													
	맞춤형 컨설팅	기업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1:1 전문가 컨설팅 진행													
	초기창업 역량강화	고객지향형 창업방법론 실습교육(CORN프로젝트 1~2단계 과정)													
	투자유치 IR	투자 IR 및 투자상담회 등 투자자 및업 기회 제공													
	창업교육	창업 실전교육 프로그램 진행													
네트워킹	참여기업 간 연계·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														
(사후관리 지원) 우수기업 후속 투자유치 연계 및 TIPS 연계 지원 등															

□ **(신청·접수 기간)** 2025. 4. 03.(목) ~ 4. 28.(월), 17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·접수는 마감일(4월 28일) **17:00 정각에 종료** (※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·접수 불가)
- ② 신청·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**일체의 내용 변경·추가·삭제 불가**
(※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③ 신청·접수 마감 시간까지 사업 신청·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
- ④ 신청서 수정 시 담당자 승인 후 재접수 가능
※ 마감시간 종료 후 수정 및 재접수 불가

□ **(신청방법)** 경남창업포털(<https://www.gnstartup.kr>) 회원가입 후 신청

※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“**경남창업포털 신청 기능 사용설명서**” 참조

○ **(예비창업자 신청시)**

사업자번호(000-00-00000), 법인등록번호(000000-0000000), 기업설립일(신청일 기준),
창업연도(신청일 기준), 사업장소재지(경상남도 양산시)로 작성

□ **(제출서류 및 제출방법)**

제출서류	양 식	제출방법	제출처
① 사업 참여 신청서	별첨 1	양식목록 내 한글(hwp) 파일로 제출	경남창업포털 (https://www.gnstartup.kr)
② 요약서	별첨 2		
③ 개인정보동의서	별첨 3		
④ 사업계획서	별첨 4		
⑤ 주민등록등본(대표자)	양식목록 내 한글문서로 붙임 제출		
⑥ 지방세 완납증명서(대표자)			
⑦ 국세 완납증명서(대표자)			
⑧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) 사본			

※ 사업계획서는 **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**을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외 양식으로
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- **(평가절차)** 총 2단계 평가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 선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발표평가	④ 최종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(1.5배수 이내 선정)	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(20분 이내)	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
'25. 4. 29.	'25. 4. 30	'25. 5. 7	'25. 5. 15

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는 주관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가 진행하며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·외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**(평가방법)**

- ① **(요건검토)**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검토
- ② **(서류평가)**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.5배수 이내를
고득점순으로 선발,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
※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

- ③ **(발표평가)** 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평가 진행

※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
※ 평가시간 : 기업별 15분 이내 (발표 10분 이내 + 질의응답 5분 이내)

※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(단, 비상 상황 발생 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)

- ④ **(최종선정)**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

※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
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**(평가지표)** 창업 아이템(제품·서비스), 비즈니스모델(BM)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각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>			
구 분	평가지표	평가요소	배 점
문제인식 (20)	창업목적 (필요성)	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 및 필요성·타당성	10
	실행 가능성	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 방법의 실현 가능성	10
사업성 (30)	목표시장	목표시장의 명확한 정의, 해당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	10
	사업화 전략	시장진입 전략 및 가능성, 사업 로드맵의 구체성·타당성	10
	기술성	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, 기술구현의 현실성	10
경쟁력 (30)	경쟁우위 요소	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요소 및 차별성·독창성	10
	경쟁력 확보방안	지속적인 경쟁력 확보·유지방안 및 계획의 구체성	10
	고도화 전략	창업아이템 및 기업역량 고도화 전략의 구체성	10
조직역량 (20)	내부 보유역량	인적·물적 인프라의 우수성, 조직구성 현황(계획)의 적절성	10
	외부 협력 파트너	외부 협력 파트너 보유현황 및 역량, 연계·협업 전략	10
총 점			100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“예비창업자”의 경우 협약체결 후 3개월('25. 8. 15.까지) 이내 창업이행(사업자등록)을 완료하여야 함
 - ※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선정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며, 본사 소재지를 양산시로 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※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으며,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발표평가 진행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함
-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□ 선정 관련 유의사항

-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,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고, 지급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7

사업 신청 문의

□ (사업 및 신청 문의)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(G-Space@East) 사업 담당자

- (연락처) ☎ 055-386-3041
- (E-mail) ✉ ejpark9090@ccei.kr